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원만한 유통분쟁 해결과 소비자 등의 권익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반영(안 제2조)

- 위원장 대상 규정(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
-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반영

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의 조정 신청(안 제10조)

-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 삭제

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거부 및 중지(안 제13조)

- 애매모호한 조항 삭제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36조”를 “36조”로 하고, “그 조직”을 “조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하고, “해당국장”을 “해당 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호 본문 중 “법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회의개최일”을 “회의 개최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출석위원과반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가부동수일”을 “가부 동수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를 “담당 과장이”로, “담당 주사”를 “담당 주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제한 ”을 “기제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청일로부터”를 “신청 날부터”로, “그 내용”을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단서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사자”를 “당사자”로 한다.

제14조 중 “당해분쟁조정”을 각각 “해당분쟁조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사자간에”를 “당사자 간에”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사자간”을 “당사자 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6조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u>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3 <u>6조</u> ----- ----- ----- <u>조직</u> ----- ----- -----.
제2조(구성) ① (생략)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시장으로 한다.</u>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u>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u> <u><신 설></u> 1. ~ 4. (생략) 5. 시 소속 공무원중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u>해당국장</u>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위원 중 호</u> <u>선한다.</u> ③ ----- ----- <u>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5. ----- <u>공무원 중</u> ----- ----- <u>해당 국장</u>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

1. 법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
항을 제외한다.

2. 법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
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3. (생략)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1. 법 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

-----.

-----.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
에 따른 -----

3.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
-----회의 개최
일 -----

-----.

-----.

② -----
-----출석위원
과반수 -----.
-----가부 동수일 -----
-----.

③ -----경우에는 ---

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 공무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
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의 조정 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
의 연서로, 법제8조의 대규모점
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포함한
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담당 과장이 ---
-----담
당 주사 -----.

<삭 제>

제8조(의견청취 등) -----

-----관계 전문가 -----

-----.

제10조(분쟁의 조정 신청)

<삭 제>

② -----
-----기재한
-----.

1. ~ 6. (생략)

제12조(조정절차) ①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

1.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조정절차) ① -----
-----신청
날부터 -----

-----내용 -----
-----.

② (현행과 같음)

③ -----단서 규정
에 따라 -----

-----.

④ -----따라

-----.

⑤ -----따라 -----

-----.

⑥ -----경
우에는 -----

-----.

여야 한다.

제13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당해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당해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제13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

-----.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따라 --

② -----
-----당사
자 -----
-----당사자 -
-----.

제14조(위원의 제척) -----
----해당분쟁조정 -----

있는 자는 당해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자료요청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비용의 부담)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

-----해당분쟁조정 -----

---.

제15조(자료요청 등) ①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
-----따라 -----

-----.

제17조(조정의 효력) -----
-----따라 -----

-----당사자 간에 -----
-----.

제18조(비용의 부담) 법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

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당사
자 간 -----

-.

관 계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군·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시·군·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38조(자료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

제39조(조정 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3.]

제40조(조정 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41조(조정 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 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관 실 · 과		과학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김 우 춘
	담 당	유 경 숙
	담 당 자	손 수 연 (480-6183)